

서울특별시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 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3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영
시

1. 계 정 사 용

중요사건 발생시 설치운영 되는 수사 본부의
수사본부상 중 관할지 경찰서 과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수사본부
기구를 보강하여 중요범죄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함.

2. 주 요 글 자

(1) 수사본부장중

경찰서 수사과장을 경찰서관으로

(2) 용보관, 분석연구관, 지도관

관리관, 수사관

신설

기상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 규정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살인 기타 특별 중요 사건(이하 "중요 사건" 이라한다) 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의 기능을 통일적으로 강력하게 발휘 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수사의 심요를 거두기 위하여 수사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사본부의 설치) (1) 경찰국장은 관내에서 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 제1항 각호외의 7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사본부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 수사하게 할수 있다.
(2) 수사본부에는 본부장, 부본부장, 수사전임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도관 과 관리반 및 수사반을 둔다.

제 3 조 (수사본부의 설치장소)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곳에 설치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수사본부의 설치지시) 경찰국장이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시 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2. 사건의 개요

3. 수사요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조 (수사본부장) (1) 수사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한다)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경찰국장이 지명한다.

1. 경찰국 제2 담당관

2. 관내에서 3개 이상의 수사본부 설치 대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국 해당과장

3. 관할지 경찰서장

(2) 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 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제 6 조 (부분장 및 수사전임관) (1) 수사본부의 부분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경찰국 제2 담당관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

가. 경찰국 해당과장

나. 관할지 경찰서장

2. 경찰국 해당과장 또는 관할지 경찰서장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

가. 경찰국 해당 계장

나.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

(2) 부분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수사본부 운영관리의 원할을 기하고
연접 경찰국·경찰서간의 공조 수사지휘에 일한다.

(3) 제7항의 편성에 있어서는 수사본부를 선거관 경찰국, 경찰서 해당과의 경정 또는 경감을 수사전임관으로 하여 수사본부의 총추로서 수사추진에 임한다.

(4) 선임관은 따로 임명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제9항의 대상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5) 본부장은 본부요원을 편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장에게 수사요원의 파견을 요구 할 수 있다.

(6) 수사본부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장의 지시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타시도 본부장으로 부터의 공조 제보는 성실하고 빠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홍보관) 홍보관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보하며 대외적으로 알력야할 사건내용과 수사협조사항을 널리 알린다.

제 8 조 (분석연구관) 분석 연구관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보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건분석 연구 검토
2. 합리적인 수사계획 수립
3. 수사기록 반독 및 보완
4. 검증조서 작성 및 송치시까지 수사 지침제시

제 9 조 (지도관) 지도관은 본부장이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보하고 분석 연구관의 사건 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반원지도, 차출, 조정등 공조 수사로 범인을 빨리검거할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 10 조 (관리반) 관리반의 반장은 본부장이 경감, 경위급으로 보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
2. 압수물, 증거물 등 보관 관리
3. 공조수사와 수사 상황 보고 시달 등 임의가져 관리 임무

제 11 조 (수사반) 수사반의 반장은 본부장이 경감, 경위급으로 보하고
수사계획에 따라 여러개 반으로 편성할수 있으며 분담수사 활동으로
증거 수집 및 범인 검거 활동에 임한다.

제 12 조 (경찰서장의 임무) (1) 경찰서장은 수사본부 사건 수사에 있어서
본부장이 지시한 수배, 조사, 기타 필요한 수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2) 각 경찰서장 및 관계소속장은 수사본부 사건에 관련된 정보 기타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초동수사반의협력) 초동수사반은 이미 출동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즉시 수사본부에 보고
인개하는 동시에 그후의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인접경찰서 해당과장의협력) 수사본부 사건 발생지의 인접경찰서
해당과장은 수사본부 사건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본부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빨리 범죠힌장이 임하여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사회의)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 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수 있다.

제 16 조 (갖추어야 할 서류) (1) 수사본부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고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수사 지휘 및 진행부
2. 수사일지 및 수사요원 배치표
3. 수사보고서 첩
4. 용의자 명부
5. 참고인 명부

(2) 경찰국 또는 경찰서 해당과장은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한꺼번에 철하여 두고 연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및 교양 자료로 한다.

(3)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한사건인 경우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후 1년으로 한다

제 17 조 (수사본부의 해산) (1) 경찰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본부의 해산을 명한다.

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예결의 전망이 없을 때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2) 경찰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 경찰서장, 기타관계 소속장에게 그 본뜻을 알려야 한다.

제 18 조 (수사검토회) 본부장은 수사본부를 폐쇄하기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본부 관계자를 소집하여 수사검토 회를 열고 수사실행의 경과를 반성 검토하는등 수사기능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속수사) (1) 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하여야 할 해당과장 또는 경찰서장이게 관계서류, 증거물등을 인계하고 수시중 유의하여야할 사항을 밝히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년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황이 있는 사건은 경찰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수사를 생략 할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수사본부 편성요원명단

구분 직위	계급	성명	소속	현장약도
본부장				1287
부본부장				
수사전담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도관				
관리반장				
수사반장				

발생지 경찰서

설치년월일	년 월 일
해산년월일	년 월 일
설치장소	

사건수사지휘 및 집행부

수사 임지 및 ~~영사~~ ^{수사요원} 배치표

00 수사본부

년 월 일 요일

조번	배치구분	계급	성명	수사상황	결과

수 사 보 고 서

수신 수사본부장

제목 수사보고

00 사건외 수사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사용이점	수사내용	비고

00 수사본부

사법경찰관 령

성명

인

용 외 자 경 부

0 0 수 사 본 부

일일	용 외 자			연령	용 외 내용	처리 일일	결과	담당
	주거	직업	성 명					

참 고 인 명 부

0 0 수 사 본 부

일일	참 고 인			연령	관 계 사 항	담 당
	주거	직업	성 명			